

# 「과학기술정책」지 발간 등 운영 지침

제정 2018. 10. 8.

## 제6장 연구윤리

**제26조(연구윤리)**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이 지침에 따른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과,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방법·내용·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논문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자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연구 자료·방법·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저자가 이미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저작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며,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통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8조(연구윤리의 기준)** ① 논문 투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투고자는 제27조에서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공개된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용하고, 공개되지 않은 저작재산권 및 자료의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요청받은 사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와 관련된 선입견 또는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지침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제 임무를 수행하고,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에 적합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논문의 내용만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이외의 자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거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사위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의 심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전공 불일치 또는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제17조(논문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정중한 표현을 통해 논문에 대한 판단 근거, 수정·보완 의견 등을 성실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5. 심사위원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내용을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29조(연구윤리 위반 제보)** ① 누구든지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의혹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와 연구원은 연구윤리 위반 의혹 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30조(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의결)** ① 편집위원회는 이 지침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보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책」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공동편집위원장 합의로 임명하고, 연구윤리 위반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연구윤리위원회 책임과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의혹의 당사자는 지침 준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지침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혹의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 후 60일 이내에 조사를 거쳐 심의를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 후 10일 이내에 공동편집위원장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합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32조(투고자 등의 협조의무)**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투고자 등은 연구윤리위원회가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무혐의에 따른 사후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심의 결과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 의혹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사후조치 의견을 공동편집위원장에게 적극 건의하여야 하며, 공동편집위원장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35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유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편집위원회 등 조사·심의에 관련된 자는 조사 대상자 및 관련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36조(제재 조치)**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이후 일정 기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 이후 위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공동편집위원장은 지침 위반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논문을 삭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공동편집위원장은 전술한 3호의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 및 제재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② 투고자격 제한, 게재 취소 외의 경미한 제재조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과학기술정책」 연구윤리 서약서

1. 본인은 「과학기술정책」의 연구윤리지침을 숙지하였으며,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연구윤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과학기술정책」의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저자(대표저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책 편집위원장 귀하**